

	학 칙	제정일자	1983. 3. 1
		개정일자	2016. 9. 1
		폐 이 지	1-40

제 1 장 총 칙

제1조(목적) 본 대학교는 대한민국 교육의 근본이념에 입각하여 국가산업발전에 필요한 전문적인 지식과 이론을 교수, 연구하고 재능을 연마하여 국가발전에 필요한 전문 직업인을 양성함을 목적으로 한다.(개정 2012. 2. 1)

제2조(명칭) 본 대학교는 충청대학교라 한다.(개정 2012. 2. 1)

제3조(위치) 본 대학교는 충청북도 청주시 흥덕구 강내면 월곡길 38 에 둔다.(개정 2012. 2. 1, 2016. 8. 1)

제4조(설치학부/학과 및 입학정원) 본 대학교에 두는 학부/학과 및 입학정원은 다음과 같다.
(개정 2002. 2. 15, 2003. 3. 1, 2004. 3. 1, 2004. 4. 14, 2005. 3. 1, 2006. 2. 1, 2007. 3. 1, 2008. 3. 1, 2009. 2. 2, 2010. 3. 1, 2011. 3. 1, 2012. 2. 1, 2012. 10. 22, 2013. 4. 23, 2014. 10. 23 2016. 4.29)

학부전공 및 학과		입학정원		입학정원	
		주간	야간		
★건축 인테리어학부	건축전공	35명	35명	간호학과	90명
	인테리어 디자인전공	35명		경찰행정과	50명
경영회계학부	경영전공	80명	80명	아동보육과	70명
	회계전공			유아교육과	53명
군사학부	군사기술 경영전공	60명	60명	응급구조과	40명
	국방정보 통신전공			의료미용과	40명
	시각디자인전공 패션디자인전공			치위생과	75명
디자인학부	식품영양 외식학부	100명	100명	미용예술과 보건의료정보과	50명 70명
	식품영양전공 식품전공			사회복지과 사회체육과	60명 60명
	호텔외식조리전공			생명화공과	70명
예술학부	방송광고 제작전공	30명	30명	소방안전과	70명
	실용음악 전	30명		식의약품분석과	40명
전기전자학부	반도체장비전공 전기전공	120명	30명	도시건설정보과 품질경영과	40명 40명
	전자통신전공 컴퓨터정보전공	30명		항공보안과	40명
항공자동차 기계학부	기계설계전공 자동차전공 항공정비전공	120명			

학부전공 및 학과		입학정원		학부전공 및 학과		입학정원	
		주간	야간			주간	야간
항공호텔 관광학부	항 공 관 광 전 공	30명				합계 [10개학부 23개전공 17개학과]	1,797명
	호 텔 · 바 리 스 타 전 공	30명					
	일 본 어 통 역 전 공	30명					

★ : 3년제, ☆ : 4년제 학부(과)임.)

제4조의 2 (학부(과) 폐지) 본 대학교에 설치한 학부(과)의 폐지 및 폐지 된 학부(과) 소속교원의 관리에 관한 사항은 총장이 따로 정 한다.(신설 2013. 4. 23)

제 2 장 수업연한과 재학연한

제5조(수업연한) ① 본 대학교의 수업연한은 2년으로 한다. 다만, 경찰행정과, 건축인테리어 학부, 치위생과, 응급구조과, 유아교육과, 의료미용과, 아동보육과의 수업연한은 3년, 간호 학과의 수업연한은 4년으로 한다.(개정 2002. 2. 15, 2004. 3. 1, 2004. 4. 14, 2005. 3. 1, 2006. 2. 1, 2008. 3. 1, 2010. 3. 1, 2011. 3. 1, 2012. 2. 1, 2013. 4. 23, 2014. 10. 23)
 ② 전공심화과정의 수업연한은 2년제의 전문학사 취득자 또는 이와 동등이상의 학력을 인정받는 자는 2년 이상, 3년제의 전문학사 취득자 또는 이와 동등 이상의 학력을 인정받은 자는 1년 이상으로 한다.(신설 2008. 3. 1)

제6조(재학연한) 재학연한은 수업연한과 관련하여 제한을 두지 않는다.(개정 2002. 2. 15)

제 3 장 학년도, 학기, 수업일수 및 휴업일

제7조(학년도) 학년도는 3월 1일부터 다음해 2월 말일까지로 한다.(개정 2002. 2. 15)

제8조(학기) ① 학기는 다음과 같이 2학기로 나눈다. 다만, 학기의 수업은 2주를 초과하지 않는 범위안에서 학기개시일 전에 개강할 수 있다.

제1학기 : 3월 1일부터 8월 31일까지

제2학기 : 9월 1일부터 다음해 2월 말일까지

② 학생의 현장적응 능력을 높이기 위하여 총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계절수업 또는 실습학기제를 설치 운영할 수 있으며, 운영방안 및 학점기준에 관하여는 총장이 따로 정한다.(조 개정 2002. 2. 15)(개정 2009. 2. 2)

제9조(수업일수) ① 수업일수는 매학년도 30주(매학기 15주) 이상으로 한다.(개정 2002. 2. 15)

② 천재·지변 기타 교육과정 운영상 부득이한 사유로 인하여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수업 일수를 충족할 수 없을 경우에는 매학년도 2주의 범위 내에서 수업일수를 감축할 수 있다.(신설 2002. 2. 15)(개정 2009. 2. 2)

③ 조기취업으로 인한 결석은 심사등을 거쳐 출석으로 인정할 수 있으며 절차 등에 대한 사항은 따로 정한다.(신설 2016. 9. 1)

제10조(휴업일) ① 정기휴업일은 다음과 같다.(개정 2002. 2. 15)

1. 삭제(2002. 2. 15)

2. 삭제(2002. 2. 15)
3. 개교기념일 : 3월 16일
4. 일요일
5. 국정공휴일
 - ② 휴업일이라도 필요한 때에는 수업을 할 수 있다.(개정 2002. 2. 15)
 - ③ 제8조 제2항에 의한 계절수업을 운영하지 않을 경우에는 총장이 다음 각호의 1과 같이 휴가기간을 정하여 휴업할 수 있다.(신설 2002. 2. 15)(개정 2009. 2. 2)
1. 하기휴가 : 6월부터 8월사이
2. 동기휴가 : 12월부터 다음해 2월사이
 - ④ 총장은 비상재해 기타 급박한 사정이 발생한 때에는 임시휴업을 할 수 있다.(신설 2002. 2. 15)(개정 2009. 2. 2)

제 4 장 입학(편입학, 재입학 포함)

제11조(입학시기) 입학을 허가하는 시기는 학기 개시일로부터 4주(28일)이내로 한다.(개정 2002. 2. 15, 2005. 9. 1)

제12조(입학자격) ① 본 대학교에 입학할 수 있는 자는 고등학교를 졸업한 자 또는 이와 동등 이상의 학력이 있다고 인정된 자로 한다.(개정 2002. 2. 15, 2008. 3. 1, 2012. 2. 1)

② 전공심화과정에 입학할 수 있는 자는 전문대학을 졸업한 자 또는 이와 동등 이상의 학력이 있다고 인정되는 자로서 전문대학 또는 학력인정과정 입학 후 동일계열 산업체 근무 경력이 1년(전년도에 졸업한 사람의 경우에는 졸업 후 9개월) 이상 있는 자로 한다.(신설 2008. 3. 1)(개정 2012. 2. 1)

제13조(입학지원) 입학을 하고자 하는 자는 총장이 정하는 입학원서와 입학모집요강에 명시된 전형별 구비서류를 첨부하여 전형료와 함께 제출 하여야 한다.(개정 2002. 2. 15, 2009. 2. 2)

제14조(입학전형) ① 신입학 전형은 매학년도 교육부장관이 정하는 전문대학 입학전형 기본계획의 범위내에서 본 대학교 입학전형관리위원회에서 정하는 방법에 의한다.(개정 2002. 2. 15, 2009. 2. 2, 2012. 2. 1, 2014. 10. 23)

② 고등교육법시행령 제29조 제2항에 해당하는 자에 대한 입학전형은 제1항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총장이 정하는 방법에 의한다.(개정 2002. 2. 15, 2009. 2. 2)

③ 삭제(2002. 2. 15)

제14조의 2(입학공정관리대책위원회) ① 입학전형의 공정한 관리를 위하여 입학공정관리대책위원회를 둔다.

② 입학공정관리대책위원회는 총장직속으로 설치되어 위원장 1인과 부위원장 1인을 포함하여 입학전형관리위원이 아닌 10명 내외의 교직원으로 구성하고 세부사항은 입학공정관리대책위원회의 규정에 따른다.(개정 2009. 2. 2)

제14조의 3(입학전형관리위원회) ① 입학전형제도의 개발 및 입학전형관리에 있어서 주요사항을 계획, 심의하기 위하여 입학전형관리위원회를 둔다.

② 입학전형관리위원회는 총장직속으로 설치되어 위원장 1인과 부위원장 1인을 포함하여 10인 내외의 교직원으로 구성하고 세부사항은 입학전형관리위원회의 규정에 따른다.(개정 2004. 3. 1, 2009. 2. 2)

제14조의 4(전공심화과정운영위원회) ① 전공심화과정의 운영에 관한 주요사항을 심의·의결하기 위하여 전공심화과정운영위원회를 둔다.

② 전공심화과정운영위원회의 구성은 산업체인사가 50% 이상 참여해야 한다.

③ 전공심화과정운영위원회의 세부운영에 관하여는 총장이 따로 정한다.(조 신설 2008. 3. 1)(개정 2009. 2. 2)

제14조의 5(대학입학 전형의 선행학습 영향평가) ① 대학별고사(논술 등 필답고사, 면접·구술고사 등)를 실시하는 경우 선행학습을 유발하는지에 대한 영향평가를 실시해야 한다.

② 선행학습 영향평가에 관한 사항은 총장이 따로 정한다.

제15조(입학허가) 입학허가는 교무회의 심의를 거쳐 총장이 허가한다.(개정 2002. 2. 15, 2009. 2. 2)

제15조의 2(입학취소)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자는 입학을 취소할 수 있다.(개정 2002. 2. 15)

1. 제출한 증빙서류에 허위사실이 발견된 자

2. 이중학적을 가진 자

3. 입학모집요강에 정한 입학취소 요건에 해당하는 자

제16조(편입학) ① 전문대학 및 대학에서 1학년 전과정, 또는 2학년 전과정을 이수한 자와 기타법령에 의하여 이와 동등 이상의 학력이 인정된 자는 제2학년 제1학기 또는 제3학년 제1학기 학기 개시일로부터 4주(28일)이내에 편입학 할 수 있다. 다만, 외국인 학생과 군 복무중 폐과된 과의 복학생 편입학은 매학기 초 4주(28일)이내에 허가할 수 있다.

② 편입학은 각 학과 또는 학부별로 입학정원의 범위내에서 여석이 있을 때 전적교에서 이수한 학과 또는 학부의 동일계에 한하여 허가한다.(조 개정 2002. 2. 15)

제16조의 2(전부/전과) ① 전부/전과는 2년제는 1학년 2학기, 3년제는 1학년 2학기 또는 2학년 1학기 개시전 재학 중 1회에 한하여 허가할 수 있다.(개정 2002. 2. 15, 2003. 3. 1, 2005. 3. 1, 2006. 2. 1, 2010. 3. 1, 2012. 10. 22, 2016. 8. 1)

② 전부/전과는 전입 및 전출 학부/학과 입학정원의 15%범위 내에서 허용하며 전부/전과 신청인원이 초과하여 선발이 필요할 때에는 성적순위에 의한다.(개정 2002. 2. 15, 2003. 3. 1, 2004. 3. 1, 2005. 3. 1, 2010. 3. 1, 2013. 4. 23)

③ 전부/전과한 자는 전출학부/학과에서 이미 취득한 학점을 전입학부/학과의 교양, 전공학점으로 인정한다.(개정 2002. 2. 15, 2003. 3. 1, 2004. 3. 1, 2005. 3. 1)

④ 다음 각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전부/전과할 수 없다.(개정 2003. 3. 1, 2004. 3. 1, 2005. 3. 1, 2006. 2. 1, 2010. 3. 1.)

1. 야간학과에서 주간학과로의 전부/전과

2. 유아교육과, 치위생과, 응급구조과, 간호학과로의 전과(개정 2012. 2. 1, 2014. 10. 23)

(신설 2015. 11. 12)

3. 3년제에서 2년제 또는 4년제에서 2·3년제 학부/학과로의 전부/전과(신설 2015. 11. 12)

4. 산업체위탁교육, 전공심화과정(단, 폐과로 인해 복학이 불가능한 경우 유사 학과로 전과 할 수 있다.)(신설 2015. 11. 12)

⑥ 학부/학과의 통·폐합 및 외국인 유학생 등의 경우에는 별도로 총장이 정하는 바에 따라 전부/전과를 허가할 수 있다.(개정 2005. 3. 1, 2006. 2. 1, 2009. 2. 2)

⑦ 전부/전과를 하고자 하는 자는 입학 후 한 학기 수강 직후 총장이 정하는 기간내에 전부/전과신청서에 성적증명서를 첨부하고 전출 학부장 및 학과장의 동의를 얻어 학적담

당 부서로 제출하여야 한다.(신설 2002. 2. 15) (개정 2003. 3. 1, 2005. 3. 1, 2006. 2. 1, 2009. 2. 2)

제17조(재입학) ① 재입학은 자퇴 또는 제적된 자로서 재적하였던 학부 및 학과의 동일학년 이하에 재입학을 허가할 수 있다. 다만, 총 정원 범위 내에 결원이 있는 경우 허가할 수 있다.(개정 2002. 2. 15, 2004. 3. 1, 2005. 3. 1, 2008. 3. 1, 2016. 8. 1))

② 다음의 각 호 해당자는 재입학 대상에 제외된다. 단, 3에 해당하는 산업체 위탁생의 경우 전직 산업체장의 동의를 받아 관련 서류를 제출할 시 산업체위탁교육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총장이 허가할 수 있다.(개정 2002. 2. 15, 2009. 2. 2)

1. 징계 제적자

2. 이중학적 보유자

3. 군위탁생 및 산업체위탁생

③ 학생활동에 관한 규정에 의하여 1987년 7월 11일부터 1993년 2월 24일까지 제적된 자 (학칙의 다른 규정에 의하여 제적된 자로서 사실상 학생활동과 관련되어 제적된 자를 포함한다) 중 총장의 허가를 받아 재입학하는 자의 경우에는 그 정원이 따로 있는 것으로 본다. 이 경우 필요한 세부사항은 총장이 따로 정한다.(개정 2009. 2. 2)

④ 2·3년제 학부/학과에 입학한 학생이 3·4년제로 개편된 학부/학과에 재입학하는 경우는 3·4년제 학부/학과 소속으로 간주하며, 이 경우 고등교육법시행령 제29조 제1항의 규정에 의거 별도정원으로 인정한다.(신설 2003. 3. 1, 2005. 3. 1, 2012. 2. 1)

제17조의 2(산업체 위탁교육) ① 산업체로부터 고등학교졸업 또는 이와 동등이상의 학력을 가진 자로서 산업체에서 근무중인 자의 교육을 위탁받을 때에는 당해 산업체와의 계약에 의한 위탁교육을 실시할 수 있다.(개정 2002. 2. 15)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위탁교육 계약에는 위탁생의 선발기준, 위탁교육의 경비부담 및 납부방법, 교육과정의 편성·운영, 산업체의 시설 및 교수 자격이 있는자의 활용, 학교에 대한 산업체의 지원 등 위탁교육에 필요한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③ 산업체 위탁교육 운영에 관한 세부적인 사항은 총장이 따로 정한다.(개정 2009. 2. 2)

제18조(등록) ① 입학이 허가된 자는 등록금납부고지서에 의거 총장이 따로 정하는 기간내에 등록을 하여야 한다.(개정 2009. 2. 2)

② 정당한 이유없이 총장이 따로 정하는 기간내에 등록을 하지 않을 때는 입학을 취소할 수 있다.(조 개정 2002. 2. 15)(개정 2009. 2. 2)

제18조의 2(장애학생 학점등록) ① 총장이 인정하는 장애학생에 대하여는 학점등록을 허가하고 신청학점에 해당하는 등록금을 납부하도록 할 수 있다.(개정 2009. 2. 2)

② 장애학생의 학점등록에 관한 구체적인 사항은 총장이 따로 정한다.(조 신설 2005. 3. 1)(개정 2009. 2. 2)

제 5 장 휴학, 복학, 자퇴 및 제적

제19조(휴학) ① 병역의무휴학과 일반휴학을 할 때에는 보증인 연서로 휴학원을 제출하여 총장의 허가를 얻어 휴학할 수 있다.(개정 2002. 2. 15, 2009. 2. 2, 2016. 8. 1)

② 제1항에 의한 휴학 종류 및 절차는 학사에 관한 내규에 정한다(개정 2002. 2. 15, 2016. 8. 1)

1. 삭제(2016. 8. 1)

2. 삭제(2016. 8. 1)

3. 삭제(2016. 8. 1)

4. 삭제(2016. 7. 1)

③ 휴학은 1년을 단위로 허가할 수 있다. 단, 창업, 병역의무, 임신·출산·육아로 인한 휴학과 총장이 허가하는 경우는 예외로 한다. (개정 2002. 2. 15, 2003. 3. 1, 2009. 2. 2, 2010. 3. 1, 2016. 8. 1)

④ 휴학한 자는 휴학기간 중 학적을 보유한다.(개정 2002. 2. 15)

⑤ 병역의무로 인한 휴학자는 수업일수 4분의 3이상 출석한 경우 각 교과목 담당교수가 중간시험 성적, 출석, 과제, 평소학습성적 등을 종합평가하여 인정하되, 필요에 따라서는 임시시험을 실시하여 해당학기 성적을 인정할 수 있다.(신설 2002. 2. 15)

⑥ 휴학횟수에는 제한을 두지 않는다(개정 2016. 8. 1)

제19조의 2(복학) ① 휴학한 자는 휴학기간 만료와 동시에 복학하여야 한다. 다만, 휴학기간 만료전이라도 총장의 허가를 받아 복학할 수 있다.(개정 2009. 2. 2)

② 복학을 원하는 자가 복학을 할 수 있는 기간은 해당학기 개강일로부터 4주(28일)가 되기 전까지로 한다.(조 신설 2002. 2. 15)

③ 일반휴학자중 병역의무휴학으로 변경하지 않고 입대하여 미복학 제적된 자가 복학을 희망할 경우 병역의무휴학으로 소급 적용하여 복학을 허용 할 수 있다.(신설 2003. 3. 1)

④ 2·3년제 학부/학과로 입학한 휴학자중 복학시 소속학과가 3·4년제로 개편되었을 경우 입학당시의 수업연한을 적용하되 본인이 원할 경우에는 3·4년제로 편제할 수 있다.(신설 2003. 3. 1, 개정 2005. 3. 1, 2012. 2. 1)

제20조(자퇴) 자퇴하고자 하는 자는 보증인 연서로 사유를 명시하여 총장의 허가를 받아야 하며, 자퇴한 자는 학적을 상실한다.(개정 2002. 2. 15, 2009. 2. 2)

제21조(제적) 학생으로서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할 때는 총장이 이를 제적한다.(개정 2002. 2. 15, 2009. 2. 2)

1. 휴학기간 종료 후 4주(28일)가 넘도록 이유없이 복학하지 아니한 자

2. 삭제(2011. 3. 1)

3. 삭제(2002. 2. 15)

4. 유급 또는 신체허약 등으로 인하여 학업성취의 가망이 없다고 인정된 자

5. 타교에 입학한 자(사이버대학 제외)(개정 2012. 2. 1)

6. 품행이 불량하여 개전의 가망이 없다고 인정된 자

7. 정당한 이유없이 매학기 소정기간에 등록을 완료하지 못한 자

제 6 장 교과, 수업 및 전공배정

제22조(교육과정) ① 교육과정은 교양교과와 전문교과로 구분하며, 관련 개설교과목의 학점 배점기준은 교양교과 10~20%, 전문교과는 80~90%로 하되, 공업계는 전문교과 50%이상을 을 실험·실습을 과한다.(개정 2002. 2. 15)

② 본 대학교 교육과정은 총장이 따로 정하여 공고한다.(개정 2002. 2. 15, 2009. 2. 2 2012. 2. 1)

③ 현장실습 의무학과의 현장실습은 전공필수로 하고 각 학부/학과별로 관련 상위법령에 따라 필요한 교과는 전공필수로 지정할 수 있으며 그 이외의 교과는 전공선택으로 한다.

(개정 2002. 2. 15, 2005. 3. 1)

④ 교육과정의 제정·개정·폐지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효율적으로 관리하기 위하여 교육과정심의위원회를 둔다.(신설 2002. 2. 15)

⑤ 교육과정심의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사항은 총장이 따로 정한다.(신설 2002. 2. 15)(개정 2009. 2. 2)

⑥ 학부의 교육과정 운영에 관한 사항은 총장이 따로 정한다.(신설 2005. 3. 1)(개정 2009. 2. 2)

⑦ 전공심화과정의 교육과정은 전공심화과정운영위원회에서 따로 정한다.(신설 2008. 3. 1)

⑧ 산업체에서 요구되는 직무수행 완성도가 높은 인력을 양성하기 위해 국가직무능력표준(NCS) 기반 현장 중심 교육과정을 개발·운영할 수 있다.(신설 2016. 8. 1)

제22조의 2(교육과정의 연계운영) 총장은 직업교육을 활성화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실업계고등학교, 대학, 산업대학 및 산업체와 상호연계하여 교육과정을 운영할 수 있다. 또한 필요한 절차를 거쳐 인정과목 학점을 인정할 수 있으며 이에 관한 세부사항은 총장이 따로 정한다.(개정 2009. 2. 2)

제22조의 3(학부내의 전공배정) ① 삭제(2005. 3. 1)

② 삭제(2005. 3. 1)

제22조의 4(국내·외국대학과의 교육과정공동운영) ① 전문학사과정 및 학사학위과정 또는 학사학위가 수여되는 전공심화과정에 국내·외국의 교육과정 공동운영 협약대학과 공동으로 교육과정을 운영할 수 있다.(개정 2012. 2. 1)

② 교육과정 공동운영 및 학점인정에 관한 사항은 총장이 따로 정한다.(조 신설 2009. 2. 2)

제22조의 5(계약에 의한 학과의 설치 운영) ① 「산업교육진흥 및 산학연협력촉진에 관한 법률」 제8조에 따른 국가, 지방자치단체 및 산업체 등과의 계약에 의한 학과(이하 '계약학과'라 한다)를 설치·운영 할 수 있다.

② 계약학과의 명칭, 교육과정의 편성 및 운영, 학생선발의 기준 및 방법, 학생정원, 운영경비, 학생의 수업료, 학기 및 수업 일수, 설치·운영 기간 및 운영위원회등에 관한 사항은 총장이 따로 정한다.(신설 2014.1.27)

제23조(비정규 특별과정 운영) ① 삭제(2002. 2. 15)

② 삭제(2002. 2. 15)

③ 삭제(2002. 2. 15)

제23조의 2(시간제학생 등록제 운영) ① 삭제(2002. 2. 15)

② 삭제(2002. 2. 15)

③ 삭제(2002. 2. 15)

제24조(교과 이수단위) ① 교과 이수단위는 학점으로 하고 1학기간 15시간 이상의 강의를 1학점으로 한다. 다만, 교육과정 운영상 필요한 경우에는 총장의 승인을 받아 15시간 이상의 강의를 1학점으로 할 수 있다.(개정 2002. 2. 15, 2003. 3. 1, 2009. 2. 2)

② 삭제(2002. 2. 15)

③ 수강신청 시 학생은 매학기 15학점 이상 취득함을 원칙으로 하되, 24학점 이상을 초과하여 취득하지 못한다.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총장의 승인을 얻어 15학점 이하를 취득할 수 있다.(개정 2002. 2. 15, 2009. 2. 2)

④ 계절수업에서 취득할 수 있는 학점은 6학점 이내로 한다.(개정 2002. 2. 15)

⑤ 제22조 제3항에 의한 현장실습 교과목의 이수단위는 1~6학점으로 하되, 현장실습의 방법, 기간 및 학점기준 등에 관하여는 총장이 따로 정한다.(개정 2003. 3. 1, 2005. 3. 1, 2009. 2. 2, 2010. 3. 1)

⑥ 대학 또는 전문대학 졸업자 및 대학 2년과정 이상의 교육과정을 전부 이수하고, 이와 동등한 학력을 가진자가 입학한 경우에는 본 대학교 해당학과에 개설된 교양교과목에 한하여 전적교 동일영역의 유사 교과목 취득학점을 인정받을 수 있다. 이 경우 성적증명서 또는 과정이수 사실을 확인할 수 있는 증명을 첨부하여 학적관리 담당부서로 제출하여야 한다.(개정 2002. 2. 15, 2012. 2. 1)

⑦ 전공심화과정으로 입학한 자는 매학기 12학점 이상 이수함을 원칙으로 하되, 20학점을 초과하여 이수하지 못한다.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총장의 승인을 얻어 12학점 미만을 수강신청 할 수 있다.(신설 2008. 3. 1)(개정 2009. 2. 2)

제24조의 2(수강신청) ① 학생은 매학기 수강신청 기간(변경기간을 포함한다)내에 제22조 제2항에 대하여 개설된 교과과정과 강의시간표를 참고하여 수강하고자 하는 교과목을 인터넷으로 신청한 후 수강신청 확인서를 수업관리 담당부서로 제출하여야 한다.

② 매 학기에 수강신청 할 수 있는 학점의 최소 및 최대범위는 제24조 제3항 및 제7항의 규정에 의한다.(개정 2012. 2. 1)

③ 수강신청한 교과목은 허가없이 임의로 변경할 수 없다. 허가없이 변경한 교과목의 취득 성적은 이를 인정하지 아니한다.

④ 총장은 당해학기 개설교과목에 대하여 수강신청 집계결과 수강인원이 15명 미만인 교과목에 대하여는 이를 폐강 할 수 있다. 이 경우 수강한 학생이 불이익이 없도록 사전에 필요한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개정 2003. 3. 1, 2009. 2. 2)

⑤ 기타 수강신청에 따른 세부절차 및 방법 등은 총장이 따로 정한다.(조 신설 2002. 2. 15)(개정 2009. 2. 2)

제24조의 3(타과수강) ① 1학년 1학기를 제외한 타 학부/학과의 해당학기에 개설된 교과에 대해서 일반선택과목으로 수강할 수 있다.(개정 2005. 3. 1, 2007. 3. 1)

② 기타 타과수강에 따른 세부적인 사항은 총장이 따로 정한다.(조 신설 2003. 3. 1)(개정 2009. 2. 2)

제25조(수업) ① 매학기의 개설 교과목은 그 학기수업 개시전에 총장이 이를 따로 정하되, 08:00부터 24:00까지 개설·운영 할 수 있다. (개정 2002. 2. 15, 2009. 2. 2, 2012. 2. 1, 2013. 4. 23)

② 수업은 주간수업, 야간수업, 가상수업, 계절수업, 현장실습, 방송·통신수업 등으로 구분하여 운영 할 수 있다.(신설 2002. 2. 15)

③ 수업시간의 단위는 교시로 표시하며, 매교시 50분(야간 45분)으로 한다.(신설 2002. 2. 15)

④ 수업은 학급단위로 실시한다. 다만,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병합하여 실시 할 수 있다.(신설 2002. 2. 15)(개정 2013. 4. 23)

⑤ 수업은 제24조 제1항에 의한 학점당 강의시간을 충족하여야 하며, 미달되는 경우에는 보충강의를 실시하여야 한다.(신설 2002. 2. 15)

⑥ 수업진행은 강의시간표와 각 교과목 담당교수가 작성한 강의계획서에 의하며, 강의계획서에는 교수목표, 강의(실습)내용, 성적평가 방법, 교재와 참고서적 등 학생의 수업에 도움이 될 수 있도록 작성하여 배포하여야 한다.(신설 2002. 2. 15)

⑦ 강의시간표에 없는 특별강의 또는 산업체연학 수업 등을 실시하고자 할 때에는 총장의

허가를 받아 실시하여야 한다.(신설 2002. 2. 15)(개정 2009. 2. 2)

⑧ 수업시간의 출석점검은 매교시마다 점검하고, 출석미달이 예상되는 자에게는 교과목 담당교수가 사전에 경고조치를 하여야 한다.(신설 2002. 2. 15)

제25조의 2(교수의 책임시간) 본 대학교 교수의 책임시간은 매학년도 30주를 기준으로 매주 12시간으로 하되, 보직교수, 겸임교수, 초빙교수의 책임시간은 총장이 따로 정하여 시행한다.(조 신설 2002. 2. 15)(개정 2009. 2. 2, 2012. 2. 1)

제 7 장 성적평가 및 졸업

제26조(시험) ① 시험은 주관식시험과 객관식시험을 병용하되, 필요에 따라서는 실기시험 또는 다른 방법에 의하여 평가할 수 있다. 시험은 정기시험과 비 정기시험으로 구분한다. (개정 2002. 2. 15)

② 각 교과목별 총 수업시간의 4분지 1이상을 결석한 자는 당해교과목의 시험에 응시할 수 없으며, 당해교과목의 학점을 미취득(FF)으로 처리한다. 다만, 제9조 3항에 따라 출석인정을 받은 조기취업자의 성적 평가에 관한사항은 따로 정한다.(개정 2002. 2. 15, 2012. 2. 1, 2016. 9. 1)

③ 정기시험은 중간고사와 기말고사로 하며, 비 정기시험은 수시시험과 재·추가시험 등으로 구분 한다. 다만, 학부/학과의 특성에 따라 졸업에 필요한 별도의 시험을 실시할 수 있다.(개정 2002. 2. 15, 2005. 3. 1)

④ 질병 등 기타 부득이한 사유로 시험에 응시하지 못한 자는 총장의 허가를 얻어 추가시험에 응시할 수 있다.(신설 2002. 2. 15)(개정 2009. 2. 2, 2012. 2. 1)

⑤ 출석부, 시험문제, 답안지 등을 그 대상 학생의 졸업 후 1년까지 보관하여야 하며, 학생의 요구가 있을 때에는 공개하여야 한다.(신설 2002. 2. 15) (개정 2003. 3. 1, 2004. 3. 1)

⑥ NCS 기반 교과목은 직무능력완성도 평가체제로 평가할 수 있다.(신설 2016. 8. 1)

제27조(성적평가) ① 성적평가는 각 교과목을 100점 만점으로 하고, 출석상황, 평소 학습성적, 과제 및 시험성적 등을 종합 평가하되, 각 교과목의 특성에 따라 다양하고 객관적인 방법으로 평가하여야 한다.

② 성적평가는 등급과, 배점, 평점으로 다음과 같이 분류하며 각 교과목의 강좌별 급제는 D급 이상으로 하되, 성적평가를 점수로 표시할 수 없는 실험, 실습, 실기과목 등 P급 평가가 합당하다고 판단되는 교과목은 P를 급제로 한다. 이때 취득한 학점을 인정하고 평점 평균 산출에는 제외한다.(개정 2012. 2. 1)

9 단계 분류방법

등급	배점	평점
A ⁺	100 - 95	4.5
A ⁰	94 - 90	4.0
B ⁺	89 - 85	3.5
B ⁰	84 - 80	3.0
C ⁺	79 - 75	2.5
C ⁰	74 - 70	2.0
D ⁺	69 - 65	1.5
D ⁰	64 - 60	1.0
F	59이하	0
P		불계

③ 추가시험 성적은 B+급까지 인정할 수 있다. 다만, 추가시험응시원을 제출한자가 정당

한 사유없이 지정된 일시에 응시하지 않을 때에는 당해 교과목 성적을 0점 처리한다.

④ 성적평가 업무를 합리적으로 관리 운영하기 위하여 학생성적평가위원회를 둘 수 있으며, 구성 및 운영방안은 총장이 따로 정한다.(개정 2009. 2. 2)

⑤ 매 학기의 성적은 인터넷으로 열람할 수 있으며 성적에 이의가 있는 자는 총장이 별도로 정하는 성적 이의신청 기간에 해당 학부/학과로 성적 이의신청서를 제출 할 수 있다. 다만, 성적 이의신청 기간 외에는 성적 이의신청을 할 수 없다.(조 개정 2002. 2. 15)(개정 2003. 3. 1, 2009. 2. 2)

⑥ NCS 기반 교과목의 성적평가는 별도로 정할 수 있다.(신설 2016. 8. 1)

제27조의 2(학점인정)(개정 2004. 3. 1, 2005. 9. 1, 2008. 3. 1) ① 재학생은 재학기간 중 총장의 승인을 얻어 국내 또는 외국의 다른 대학(교) 연구기관, 산업체 및 해외인턴십 등으로 취득한 학점은 졸업학점의 1/2 범위 내에서 본 대학교에서 취득한 학점으로 인정 할 수 있다.(개정 2005. 9. 1, 2007. 3. 1, 2009. 2. 2, 2012. 2. 1)

② 삭제(2008. 3. 1)

③ 본 대학교 재적생 중 입영 또는 복무로 인하여 휴학 중인 자가 본 대학교에서 제공하는 정보통신망 등을 활용한 원격수업을 통해 학점을 취득하고자 할 시 등록을 허가 할 수 있으며 취득한 학점은 학기당 6학점, 연 12학점 이내에서 인정할 수 있다.(신설 2008. 3. 1)(개정 2012. 2. 1, 2014. 10. 23)

④ 본 대학교 입학 전 고등학교에서 대학수준의 교육과정을 이수한 자는 그 교과목을 본 대학교에서 이수한 것으로 인정할 수 있다.(신설 2008. 3. 1)(개정 2012. 2. 1)

⑤ 전공심화과정으로 입학한자의 전문대학과정 이수학점의 인정범위는 2년제 학과 졸업자는 80학점, 3년제 학과 졸업자는 120학점 이내에서 인정한다.(신설 2008. 3. 1)

⑥ 「병역법」에 따른 징집·소집 또는 지원에 의하여 입영 또는 복무 중인 자(이하 "입영 또는 복무 중인 자"라 한다)가 해당 기관에서 제공하는 교육·훈련과정 중 「학점인정 등에 관한 법률」 제3조의 규정에 따라 평가인정을 받은 과정을 이수하여 취득한 경우, 학기당 6학점 이내, 연 12학점 이내로 학점을 인정할 수 있다.(신설 2009. 2. 2)(개정 2012. 2. 1, 2014. 10. 23)

제28조(진급인원) 2학년과 3학년 및 4학년에 진급할 수 있는 인원은 1학년과 2학년 및 3학년 과정 이수자를 대상으로 진급사정회의를 거쳐 총장이 정한다.(개정 2002. 2. 15, 2005. 3. 1, 2009. 2. 2, 2012. 2. 1)

제29조(성적의 취소) 이미 인정된 성적이 과오 또는 부정행위에 의한 것이었거나, 학기가 끝나도록 등록금을 완납하지 않을 때는 이를 취소한다.(개정 2004. 3. 1)

제30조(경고) 성적평가 결과 매 학기말에 취득한 학점의 평점평균이 1.5에 미달된 자에게 경고를 발하며, 성적표와 함께 본인, 보호자 및 학부장/학과장에게 통보하고 관련내용을 학적부에 기재한다. 다만, 졸업요건을 충족한 졸업 가능자는 예외로 한다.(개정 2002. 2. 15, 2006. 2. 1, 2010. 3. 1, 2012. 2. 1)

제31조(졸업 및 수료) ① 총장이 따로 정하는 교육과정을 이수하고 제5항의 졸업에 필요한 학점을 충족한 자에 대하여 별지 1 및 별지 3의 서식에 의하여 별표 1 및 별표 2에 해당하는 전문학사학위 및 학사학위를 수여 한다.(개정 2009. 2. 2, 2012. 2. 1)

② 1997학년도 이전에 졸업한 자에 대하여는 본인의 신청에 따라 별지 1의 서식에 의하여 별표 1에 해당하는 전문학사학위를 수여할 수 있다. 다만, 학점인정등에 관한법률 제9조 및 학칙 제61조 제2항에 의하여 전문학사학위를 수여 받고자 하는자는 별지 1-1호 서식에 의

하여 별표 1에 해당하는 전문학사 학위를 수여 할 수 있다.

③ 총장이 따로 정한 학점을 이수하고도 진급 또는 졸업사정에서 탈락된 자에게는 별지 2호 서식의 수료증을 수여할 수 있다. 이 경우 해당학년의 수료에 필요한 학점은 다음과 같다.(개정 2009. 2. 2, 2012. 2. 1)

1. 1학년 수료 : 40학점 이상
2. 2학년 수료 : 80학점 이상
3. 3학년 수료 : 120학점 이상
4. 4학년 수료 : 140학점 이상

④ 학점 미달 등 특별한 사유가 있을 때에는 후기졸업을 할 수 있으며, 후기졸업대상자는 졸업사정회의 심의를 거쳐 총장이 정한다. 후기졸업대상자는 당해 졸업학년도 다음해의 8월 중에 졸업하되, 졸업에 필요한 학점을 충족하여야 한다.(개정 2005. 3. 1, 2009. 2. 2)

⑤ 수업연한이 2년제인 학부/학과의 졸업에 필요한 최저 취득학점은 80학점(교양교과 8학점이상, 전공교과 64학점이상)이며, 3년제는 120학점(교양교과 12학점이상, 전공교과 96학점이상)이상으로 하되, 필수과목을 취득하지 아니 하고는 졸업할 수 없다.(조 개정 2002. 2. 15)(개정 2003. 3. 1, 2012. 2. 1)

제31조의 2(전공심화과정에 대한 학위수여) ① 전공심화과정으로 입학한 자는 전문대학과정 이수인정학점을 포함하여 140학점 이상을 이수해야 한다.

② 고등교육법 제50조의 2에 의거 전공심화과정을 이수하고 제1항의 졸업학점에 충족된 자는 별지 3의 서식에 의하여 별표 2에 해당하는 학사학위를 수여한다.

③ 학점미달 등 특별한 사유가 있을 때에는 소정의 학점을 취득한 후 후기졸업을 할 수 있다.(조 신설 2008. 3. 1)

제31조의 3(복수(공동)학위제) ① 국내 · 외대학과의 교육과정 공동운영 협약에 의한 전과정을 이수한 자에게 협약대학과 공동명의로 학위를 수여할 수 있다.(개정 2012. 2. 1)

② 복수(공동)학위수여에 관한 세부적인 사항은 총장이 따로 정한다.(조 신설 2009. 2. 2)

제31조의 4(학위수여의 취소) ① 학위를 받은자가 해당 학위를 부정한 방법으로 받은 경우에는 교무회 심의를 거쳐 각각 그 학위 수여를 취소할 수 있다.(신설 2015. 4. 27)

제32조(유급) 동일학년의 1학기와 2학기를 연속하여 경고를 받은 자와 진급 및 졸업사정에서 탈락된 자는 재학기간 중 1년 단위로 유급할 수 있으며, 그 운영방법은 총장이 따로 정한다.(개정 2002. 2. 15, 2009. 2. 2, 2015. 11. 12)

제 8 장 학생활동

제33조(학생회 조직) 학생 상호간의 친목을 도모하고 건전한 학풍을 조성하며 지도력과 자치능력을 배양하기 위하여 본 대학교에 학생자치 기구로 학생회를 두며 학생회 운영에 관한 사항은 따로 정한다.(개정 2012. 2. 1)

제34조(학생회비) 학생회의 회원은 학생회에서 따로 정한 회비를 납부하여야 한다.(개정 2002. 2. 15)

제35조(학생단체의 조직) 학생회에 소속되지 아니한 단체를 조직하고자 할 때에는 학생회 지도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총장의 승인을 얻어야 한다.(개정 2009. 2. 2)

제36조(학생대표 선임방법) 학생회장, 부학생회장 및 대의원 정 · 부의장, 각 학부/학과 학회

장 · 부학회장 선임에 관한 사항은 따로 정한다.(개정 2006. 2. 1)

제37조(기구 및 부서) 학생회는 합리적이고 능률적인 운영을 위하여 다음 각호의 부서를 두며 다음 각호의 사무를 관장한다.(개정 2009. 2. 2)

1. 총 무 국 : 본 회의 제반사업의 서무, 문서, 회계 및 기타 사무를 담당한다.
2. 기 획 국 : 본 회의 제반사업을 기획하며 업무를 조정한다.
3. 문 예 국 : 학예술활동 및 교양취미, 오락활동에 관한 제반사항을 담당한다.
4. 체 육 국 : 회원의 심신단련 및 체육활동에 관한 제반사항을 담당한다.
5. 사 회 국 : 학내질서 및 교풍확립과 지역사회에 대한 봉사활동에 관한 사항을 담당한다.
6. 여학생국 : 여학생의 학내외 활동 일체 및 여학생 친목에 관한 사항을 담당한다.

제38조(임무 및 기능) 학생회 회원은 회칙을 준수하고 회비를 납부하여야 하며 본 회의 기능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학술연구 활동
2. 예술, 체육, 취미 활동
3. 각종 봉사활동
4. 학교 또는 주변의 화재 등 각종 재난시 방재 및 지원 활동

제39조(학생활동 금지) 학생은 학내외를 막론하고 정당 또는 정치적 목적의 사회단체에 가입하거나 정치활동을 할 수 없고 학교운영에 관여할 수 없으며 집단행위, 시위, 성토, 농성, 등교거부, 마이크 사용 등으로 학업에 지장을 초래하는 어떠한 행위도 할 수 없다.

제40조(임원임기) 학생회 임원의 임기는 1년으로 한다.

제41조(지도위원회) 학생회의 활동을 지도 육성하기 위하여 지도위원회를 두고 구성 및 기능은 따로 정한다.

제42조(효력정지) 학생자치 기구는 전시, 사변 또는 이에 준하는 국가 비상사태에 있어서는 그 효력 및 활동이 정지된다.

제43조(학생 지도) ① 총장은 매학년초 학생지도 계획을 세워 학생지도를 분담시키며 지도 교수는 총장의 명을 받아 학생을 지도하되 특히, 학칙 위반자에 대하여 특별지도를 하여야 하며, 개별상담에 응하고 그 문제 해결을 위해 부단히 노력하여야 한다.(개정 2009. 2. 2, 2016. 7. 1)

②대학의 건전한 집단 활동을 위해 학생 집단 활동 시 담당 지도교수 및 대표학생을 책임자로 지정한다.(신설 2016. 8. 1)

③ 학생안전과 인권침해 예방을 위해 예방교육을 실시하며, 학생안전사고예방을 위한 규정은 따로 정한다.(신설 2016. 8. 1)

제44조(학생활동의 사전승인) 학생단체 또는 학생이 다음에 열거한 행위를 하고자 할때에는 총장의 승인을 받아야 하며, 다음 각호의 집회에 있어서는 목적, 개최일시, 장소, 참가예정 인원 등에 대하여 승인을 받아야 한다.(개정 2009. 2. 2)

1. 교내의 10인 이상의 집회
2. 교내의 광고, 인쇄물의 첨부 또는 배부
3. 각기관 또는 개인에 대한 학생활동 후원요청 또는 시상의뢰
4. 외부인사의 학내초청

제45조(간행물 발행) 학생단체 또는 학생의 모든 정기, 부정기 간행물은 지도교수(지도위원)가 지도하고 인쇄된 간행물은 배포전에 총장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개정 2009. 2. 2)

제46조(처벌) 본 장의 제 규정을 위반하여 징계 제적된 자(타교에서 제적된 자 포함)는 재입학 또는 편입학 할 수 없다.

제 9 장 규율과 상별

제47조(규율) 학생은 학칙을 준수하고 성심성의로 학업에 종사하여 학문과 기술을 배우고 익혀 교양을 높임으로써 장차 전문 직업인으로서의 자질을 닦아야 한다.

제48조(결석) 학생이 질병, 기타 부득이한 사유로 결석하게 될 때에는 지체없이 결시허가원을 작성하여 총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단, 질병으로 결석이 7일을 초과할 때에는 전문의의 진단서를 첨부하여야 하며, 4주(28일)이상 결석하게 될 때에는 휴학을 하여야 한다.(개정 2002. 2. 15, 2009. 2. 2)

제49조(포상) ① 총장은 품행이 방정하고 학업성적이 우수한자 또는 선행에 있어 타의 모범이 될 만한 자에게 포상할 수 있다.(개정 2009. 2. 2)

② 포상에 관련된 포상 종류 및 수여 대상은 총장이 정하는 바에 의한다.(개정 2009. 2. 2)

제50조(징계) ① 총장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할 때에는 교무회의 심의를 거쳐 징계 처분 할 수 있다.(개정 2009. 2. 2)

1. 이 학칙 및 본 대학교의 제반규칙을 위반한 자(개정 2012. 2. 1)

2. 폭력행위, 불법적인 집단행위, 시험중 부정행위, 학교시설물 파괴, 절취 등 학생의 본분을 크게 벗어나는 행위를 한 자

3. 학교의 정상적인 기능을 방해하거나 학교의 명예를 실추 시킨 자

4. 기타 학생의 본분을 이탈한 행위를 한 자

② 징계는 그 정상에 따라 근신, 유기정학, 무기정학 및 퇴학으로 구분한다.

③ 제2항의 징계종류에 따른 사유 및 처벌의 양정은 총장이 정하는 바에 의한다.(개정 2009. 2. 2)

제 10 장 등록금

제51조(등록금) ① 학생은 매학기 총장이 따로 정하는 기간내에 수업료, 입학금(신입학, 편입학), 기타 납부금으로 구성되는 등록금을 납부하여야 한다.(개정 2002. 2. 15, 2009. 2. 2, 2014. 1. 27)

② 삽 제

③ 납부한 등록금 중 대학등록금에 관한규칙 제6조의 규정에 의한 반환사유에 해당될 때에는 이를 반환하여야 한다.(개정 2002. 2. 15, 2011. 7. 1)

④ 삭제(2011. 7. 1)

⑤ 총장은 생활이 곤란하여 학비조달이 어려운 학생이 등록금 납부연기 신청이나 분할납부를 원할 경우 부득이 하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개강일로부터 3개월 범위내에서 납부기간을 연장 할 수 있다.(신설 2002. 2. 15)(개정 2009. 2. 2, 2015. 4. 27)

⑥ 전부/전과로 인하여 납부한 등록금액이 변경되었을 경우에는 그 차액분을 추가 납부하거나 반환 받을 수 있다.(신설 2010. 3. 1)

제52조(납입금의 면제) 총장은 품행이 방정하고 학업성적이 우수한자 및 국가유공자에 대하여 납입금의 일부 또는 전부를 면제할 수 있다.(개정 2009. 2. 2)

제52조의2(등록금심의위원회 운영) ① 등록금 책정에 관한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등록금 심의위원회를 두며, 9인 이상의 위원으로 구성한다.(개정 2012. 2. 1)
 ② 등록금심의위원회 운영에 관한 세부사항은 총장이 따로 정한다.(조신설 2011. 3. 1)

제 11 장 장 학 금

제53조(장학금) ① 총장은 재학생 중 품행이 방정하고 학업성적이 우수한 학생과, 경제적 사정으로 학비 마련이 극히 곤란하여 학업을 계속할 수 없는 자에게 장학금을 지급할 수 있다.(개정 2009. 2. 2)
 ② 장학금 운영에 관한 규정은 총장이 따로 정한다.(개정 2009. 2. 2)

제53조의 2(특별지원 장학금) ① 총장은 개인장학회 설립이 어려운 기탁자를 대리하여 특별 지원장학금을 운영할 수 있다.(개정 2009. 2. 2)
 ② 특별지원 장학금의 운영에 관한 규정은 총장이 따로 정한다.(개정 2009. 2. 2)

제 12 장 교수회 및 교무회

제54조(구성) ① 교수회는 전임교원으로 구성한다. 단, 총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그 외의 자를 포함 시킬 수 있다.(개정 2009. 2. 2)
 ② 교무회는 총장, 부총장, 교학처장, 입학처장, 기획처장, 평생직업교육처장, 산학취업처장, 사무처장, 산학협력단장 및 총장이 지명하는 교직원으로 구성한다.(조 개정 2002. 2. 15)(개정 2004. 3. 1, 2005. 3. 1, 2006. 2. 1, 2007. 3. 1, 2008. 3. 1, 2009. 2. 2, 2011. 3. 1, 2012. 2. 1, 2013. 4. 23, 2014. 10. 23. 2015. 11. 12)

제54조의 2(각종위원회) ① 이 학칙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심의하고 총장의 자문에 응하기 위하여 자문기관으로서 각종 위원회를 설치 운영할 수 있다.(개정 2008. 3. 1, 2009. 2. 2)
 ② 위원회의 구성과 운영에 관한 세부사항은 총장이 따로 정한다.(조 신설 2002. 2. 15)(개정 2008. 3. 1, 2009. 2. 2)

제55조(소집 및 심의) ① 교수회 및 교무회는 총장이 이를 소집하고 의장이 되며, 총장 부재시에는 그 직무 대리자가 업무를 대행한다.(개정 2009. 2. 2)
 ② 교수회는 총장이 부의하는 사항에 대하여 심의한다.(개정 2009. 2. 2)
 ③ 교무회는 총장의 자문에 응하여 다음의 사항을 심의한다.(개정 2009. 2. 2)
 1. 학칙 및 제규정의 제정·변경에 관한 사항
 2. 교육 및 학사에 대한 주요 사항
 3. 학생지도 및 상벌에 관한 사항
 4. 기타 총장이 부의하는 사항(개정 2009. 2. 2)
 ④ 교수회 및 교무회 운영에 관한 세부 사항은 따로 정한다.

제 13 장 직 제

제56조(교직원) ① 본 대학교에는 총장, 부총장, 교수, 부교수, 조교수의 교원과 직원 및 조교를 둘 수 있다.(개정 2006. 2. 1, 2009. 2. 2, 2012. 2. 1, 2012. 10. 22, 2013. 4. 23, 2016.)

8. 1)

② 전항의 교원에는 강의중점교원 및 산학협력중점교원을 포함한다.(신설 2013. 4. 23)

제57조(직제) ① 본 대학교에는 다음 각 호의 부서를 둔다.(개정 2012. 2. 1)

1. 대학본부(교학처, 입학처, 기획처, 평생직업교육처, 산학취업처, 사무처)(개정 2004. 3. 1, 2005. 3. 1, 2006. 2. 1, 2007. 3. 1, 2008. 3. 1, 2009. 2. 2, 2011. 3. 1, 2012. 2. 1, 2014. 10. 23, 2015. 11. 12)

2. 학부

② 각 부서에 부서장을 보하며 부서장은 총장의 명을 받아 소관사무를 정리하고 부서내 직원을 지휘 감독한다.(개정 2009. 2. 2)

③ 각 부서의 사무분장은 따로 정한다.

제57조의 2(직속기구) ① 본 대학교에는 총장 직속기구를 별도로 둘 수 있다.(개정 2005. 3. 1, 2007. 3. 1, 2009. 2. 2, 2012. 2. 1, 2015. 11. 12)

② 이 기구의 운영에 관한 규정은 따로 정한다.

제57조의 3(산학협력단) ① 본 대학교에 산학협력단을 둔다.(개정 2012. 2. 1, 2015. 11. 12)

- ② 산학협력단의 설립 ·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총장이 따로 정한다.(조 신설 2004. 3. 1)(개정 2009. 2. 2)

제57조의4(장애학생지원기구) ① 장애학생의 교육 및 생활지원을 위하여 장애학생 특별지원 위원회와 장애학생지원센터를 둔다.

② 장애학생 특별지원위원회 및 장애학생지원센터 운영에 관한 필요한 사항은 총장이 따로 정한다.(조신설 2011. 3. 1)

제57조의5(다문화가족학생지원기구) (신설 2016. 8. 1) ① 다문화가족학생의 교육 및 생활지원을 위하여 다문화가족학생 특별지원위원회와 다문화가족학생 지원센터를 둘 수 있다.

② 다문화가족학생 특별지원위원회 및 다문화가족학생 지원센터 운영에 관한 필요한 사항은 총장이 따로 정한다.

제 14 장 부속기관 및 부설기관

제58조(부속기관 및 부설기관) ① 본 대학교에는 부속기관을 둘 수 있다.(개정 2012. 2. 1, 2014. 10. 23)

② 부속기관의 운영에 관한 규정은 따로 정한다.(개정 2014. 10. 23)

③ 대학발전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학부(과) 교육운영과 관련된 외부기관을 수탁 받아 운영할 수 있다.(신설 2008. 3. 1)

④ 도서관은 「대학도서관진흥법」 및 「대학도서관진흥법 시행령」을 준용하여 운영한다.
(신설 2016. 4. 29)

제 15 장 평생교육

제59조(비정규 특별과정) ① 본 대학교에는 일반사회인 및 졸업생을 대상으로 3개월 내지 1년과정의 비정규 특별과정을 설치 운영할 수 있다.(개정 2002. 2. 15, 2012. 2. 1)

② 비정규 특별과정은 본 대학교에 설치된 학과 와 유사한 분야에 한하여 설치한다.(개정

2012. 2. 1)

③ 비정규 특별과정 운영에 관한 세부적인 사항은 총장이 따로 정하여 교육부장관에게 보고 후 운영한다.(개정 2002. 2. 15, 2009. 2. 2, 2014. 10. 23)

제60조(시간제 등록) ① 본 대학교에서는 고등교육법 제36조 및 동법 시행령 제53조의 규정에 의하여 일반 사회인에게 재교육 및 평생교육의 기회를 제공하기 위하여 총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시간제로 등록하여 수업을 받는 자(이하 “시간제등록생”이라 한다)를 모집하여 선발할 수 있다.(개정 2002. 2. 15, 2009. 2. 2, 2012. 2. 1)

② 시간제등록생 모집인원은 당해 학년도 입학정원의 10% 범위안에서 학년도 별로 모집한다.(개정 2002. 2. 15)

③ 시간제등록생은 고등학교졸업자 또는 법령에 의하여 동등이상의 학력이 있다고 인정된 자로 한다.(신설 2002. 2. 15)

④ 시간제등록생이 신청할 수 있는 학점은 매학기 12학점 및 연간 최대 24학점을 초과 할 수 없다. (신설 2002. 2. 15) (개정 2015. 4. 27)

⑤ 시간제등록생이 본 대학교에서 전문학사 학위를 수여 받고자 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호의 요건을 충족하여야 한다.(신설 2002. 2. 15)(개정 2012. 2. 1)

1. 학점인정등에관한법률 제7조의 규정에 의하여 80학점(3년제는 120학점)이상 학점인정을 받은자

2. 학점인정등에관한법률시행령 제16조 제2항에 의하여 본 대학교에서 48학점(3년제는 65학점)이상 취득한 자(개정 2009. 2. 2, 2012. 2. 1)

⑥ 시간제등록생 운영에 관하여 이 조에서 정하지 아니한 필요한 사항은 총장이 따로 정한다.(개정 2002. 2. 15, 2009. 2. 2)

제61조(학점은행제) ① 본 대학교에서는 평생학습을 위하여 학점은행제 시행에 따른 학습과정을 설치 · 운영 할 수 있다.(개정 2012. 2. 1)

② 학점인정등에관한법률 제7조(학점인정)에 의하여 학점인정을 받고, 본 대학교에서 48학점(3년제 65학점) 이상을 취득하여 학칙 제31조 제5항의 졸업요건이 충족된 자에게는 별지 제1-1호 서식에 의하여 해당하는 전문학사학위를 수여할 수 있다.(개정 2009. 2. 2, 2012. 2. 1)

③ 학점은행제 운영에 관하여 이 조에서 정하지 아니한 필요한 사항은 총장이 따로 정한다.(조 신설 2002. 2. 15)(개정 2009. 2. 2)

④ 삭제(신설 2003. 3. 1, 2007. 3. 1)

제62조(가상강좌 및 공개강좌) ① 본 대학교에서 개설한 강좌는 가상강좌로 운영할 수 있으며, 이에 필요한 사항은 총장이 따로 정한다.(개정 2009. 2. 2, 2012. 2. 1)

② 본 대학교 학생이외의 자를 대상으로 공개강좌를 개설 할 수 있으며, 강좌개설에 필요 한 사항은 총장이 따로 정한다.(조 신설 2002. 2. 15)(개정 2009. 2. 2, 2012. 2. 1)

제63조(비학위 전공심화과정의 설치 · 운영)(개정 2008. 3. 1) ① 전문대학 졸업자 또는 이와 동등학력이 있는 자 중 전문대학 또는 학력인정과정 입학 후 산업체 근무경력이 1년(전년도에 졸업한 사람의 경우에는 졸업후 9개월) 이상인 자를 대상으로 하여 교육부에 보고 후 전공심화과정 중 학위가 수여되지 않는 과정(이하 “비학위과정”이라 한다.)을 설치 · 운영 할 수 있다.(개정 2002. 2. 15, 2008. 3. 1, 2009. 2. 2, 2012. 2. 1, 2014. 10. 23)

② 비학위과정은 정규 학위과정과는 별도로 운영되며, 그 수업연한은 1년 이내로 한다.(신설 2002. 2. 15)(개정 2008. 3. 1)

③ 비학위과정에 관한 세부적인 사항은 총장이 따로 정한다.(개정 2002. 2. 15, 2008. 3. 1, 2009. 2. 2)

제 16 장 학교기업

제64조(학교기업의 설치) ① 본 대학교에 산업교육진흥 및 산학협력촉진에 관한법률 제36조에 의한 학교기업을 설치하고, 그 명칭을 ‘충청대학교 공학기술연구원’(이하 ‘공학기술연구원’이라 한다)이라 한다.(개정 2006. 2. 1, 2007. 3. 1, 2011. 3. 1, 2012. 2. 1, 2014. 10. 23)

② 학교기업은 학교기업의 설치·운영에 관한 규정 제3조에 의거하여 교지 안으로 하되, 학생들의 교육에 필요한 경우에는 충청북도 안에 한하여 교사시설 또는 교지 밖으로 할 수 있다.(개정 2006. 2. 1, 2007. 3. 1, 2010. 3. 1)

③ 공학기술연구원은 토토과와 연계하여 ‘공학기술관련산업’을 사업내용으로 한다.(조 신설 2004. 7. 1)(개정 2006. 2. 1, 2007. 3. 1, 2009. 2. 2, 2011. 3. 1, 2014. 10. 23)

제65조(학교기업의 현장실습 활용) ① 학교기업에서의 현장실습교육을 4주(160시간)이상 이수한 경우 이를 6학점 이내로 인정할 수 있다.(신설 2016. 8. 1)

② 기타 학교기업에서의 현장실습교육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별도 규정으로 정한다.(조 신설 2004. 7. 1)

제66조(학교기업의 보상금 지급기준) ① 학교기업 운영성과 결산결과 순이익 발생시 순이익의 20% 범위 내에서 순이익 발생에 직접 기여한 교직원 및 학생에 대한 보상금을 줄 수 있다.

② 교직원 1인당 연간 보상금은 순이익의 5%를 넘을 수 없다.

③ 학생에 대한 보상금은 장학금 형태로 지급하되, 1인당 연간 등록금 총액을 넘을 수 없다.

④ 제2항, 제3항에도 불구하고 사업수행을 위하여 교직원 또는 학생이 특허 등 산업체산권을 제공한 경우 이에 대한 보상금은 별도 기준에 의해 지급할 수 있다.

⑤ 학칙에 정하지 않은 구체적인 보상금 지급기준은 별도 세칙으로 정할 수 있다.(조 신설 2004. 7. 1)

제 17 장 보 칙

제67조(시행세칙) 이 학칙의 시행에 필요한 세칙은 총장이 따로 정한다.(개정 2009. 2. 2)

제68조(학칙개정) ① 학칙을 제·개정할 경우에는 제·개정안의 취지, 주요내용 또는 전문을 공고하여야 한다.

② 학칙 제·개정안의 공고기간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10일 이상으로 한다.(개정 2015. 11. 12)

③ 본 대학교의 교직원은 공고된 제·개정안에 대하여 그 의견을 제출할 수 있다.(개정 2012. 2. 1)

④ 학칙 제·개정안에 대한 의견이 제출된 경우에는 의견을 제출한 자에게 그 제출된 의견의 처리결과를 통지하여야 한다.

- ⑤ 사전 예고절차를 거친 학칙 제·개정안은 대학평의원회회의 심의를 거쳐야 한다.(개정 2009. 2. 2)
- ⑥ 제·개정 학칙의 공포는 대학평의원회회의 심의를 마친 후 관계서류를 첨부하여 총장의 승인을 얻어 공포한다.(조 신설 2002. 2. 15)(개정 2008. 3. 1, 2009. 2. 2, 2012. 2. 1)
- 제69조(성희롱·성폭력 예방 및 처리) 본 대학교 구성원의 성적 자율권 확보와 성희롱·성폭력의 예방 및 처리에 관한 제반 사항은 총장이 따로 정하여 시행한다.(조 신설 2002. 2. 15)(개정 2012. 2. 1)
- 제70조(자체평가) 고등교육법에 따라 대학자체평가를 실시하며 평가기준, 절차 및 방법에 관한 세부사항은 총장이 따로 정한다.(조신설 2010. 3. 1)

부 칙

1. (시행일) 이 학칙은 1983년 3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

1. (시행일) 이 학칙은 1984학년도 개시일부터 시행한다.

2. (학생에 대한 경과조치) 이 학칙 시행당시의 재적생에 대하여는 종전의 규정을 적용한다.

부 칙

1. (시행일) 이 학칙은 1984년 1월 23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

1. (시행일) 이 학칙은 1984년 3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

1. (시행일) 이 학칙은 인가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부 칙

1. (시행일) 이 학칙은 1985학년도 개시일부터 시행한다.

2. (학생에 대한 경과조치) 이 학칙 시행당시의 재적생에 대하여는 종전의 규정을 적용한다.

부 칙

1. (졸업자격고사 합격자처리) 1981학년도 이후 1984학년도 이전에 입학한 자중 전문대학 전과정을 이수한자 또는 이수예정자로서 졸업정원에서 제외된 자가 전문대학 졸업자격고사에 합격한 때에는 제4조의 규정에 불구하고 그 정원이 따로 있는 것으로 본다.
2. (시행일) 이 학칙은 1985년 1월15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

1. (시행일) 이 변경 학칙은 1985년 4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

1. (시행일) 이 학칙은 1986학년도 개시일부터 시행한다.
2. (학생에 대한 경과조치) 이 학칙 시행당시의 재적생에 대하여는 종전의 규정을 적용한다. 다만, 학과의 명칭이 변경된 학과에 소속된 학생중 정당한 사유로 인하여 1986학년도 말까지 졸업하지 못하는자가 있을 때에는 변경된 학과의 학생으로 본다.

부 칙

1. (시행일) 이 학칙은 1987년 3월 1일부터 시행한다.
2. (학생에 대한 경고 조치) 학과의 명칭이 변경된 학과에 소속된 재적생중 정당한 사유로 인하여 1987학년도 말까지 졸업하지 못하는자가 있을 때에는 변경된 학과의 학생으로 본다.

부 칙

1. (시행일) 이 학칙은 1988년 3월 1일부터 시행한다.
2. (졸업정원을 입학정원으로 전환함에 따른 경과조치) 1983학년도부터 1987학년도 사이에 입학한자중 학생이 1988학년도까지 졸업하는 자에 대한 학생정원의 운영에 관하여는 제 4조, 제16조, 제16조의 2, 제27조, 제28조, 제31조의 개정규정에 불구하고 종전의 규정에 의한다.
3. (학과의 개편 등에 따른 학생소속변경) 학과가 신설, 통합 또는 개편된 경우에는 종전의 학과에 소속된 재적생중 정당한 사유로 인하여 1988학년도 말까지 졸업하지 못한자는 신설, 통합 또는 개편된 학과의 소속으로 할 수 있다.

부 칙

1. (시행일) 이 학칙은 1989년 3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

-
1. (시행일) 이 학칙은 인가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부 칙

1. (시행일) 이 학칙은 1990년 3월 1일부터 시행한다.
2. (학과개편에 따른 학생소속 변경) 1989학년도에 입학한 학생중 종전학과의 학생은 개편된 학과의 소속으로 한다.
3. (학과개편에 따른 경과조치) 종전의 학과에 소속된 재학생중 정당한 사유로 1990학년도 말까지 졸업하지 못한 자는 개편학과의 소속으로 한다.

부 칙

1. (시행일) 이 학칙은 인가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부 칙

1. (시행일) 이 학칙은 1990년 3월 1일부터 시행한다.
2. (학생에 관한 경과조치) 이 학칙 시행당시 충청실업전문대학 재직생은 이 학칙에 의한 충청전문대학의 해당학과 해당학년에 재직하는 것으로 본다.
3. (교직원에 관한 경과조치) 이 학칙 시행당시 충청실업전문대학 소속 교직원은 이 학칙에 의한 충청전문대학의 소속으로 본다.

부 칙

1. (시행일) 이 학칙은 1991년 3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

1. (시행일) 이 학칙은 1991년 4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

1. (시행일) 이 학칙은 1992년 3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

1. (시행일) 이 학칙은 1993년 3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

1. (시행일) 이 학칙은 1993년 4월 13일부터 시행한다.

2. (입학시기에 관한 특례) 제17조 제4항에 의거 허가를 받아 재입학 하는 자중에 1993학년 제1학기에 재입학을 신청하는 경우에는 제11조의 규정에 불구하고 1993년 4월 30일 까지 재입학을 허가할 수 있다.

부 칙

1. (시행일) 이 학칙은 1993년 8월 4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

1. (시행일) 이 학칙은 1994년 3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

1. (시행일) 이 학칙은 1995년 3월 1일부터 시행한다.

2. (학과 명칭 변경에 따른 경과조치) 종전의 통신과에 소속된 재적생 중 정당한 사유로 인하여 1995학년도 말까지 졸업하지 못한 학생은 전자통신과의 소속으로 본다.

부 칙

1. (시행일) 이 학칙은 1996년 3월 1일부터 시행한다.

2. (학과 명칭 변경에 따른 경과조치) 종전의 의상과, 식품가공과, 산업전산과에 소속된 재적생 중 정당한 사유로 인하여 1996학년도 말까지 졸업하지 못한 학생은 의상디자인과, 식품공업과, 멀티미디어과의 소속으로 본다.

부 칙

1. (시행일) 이 학칙은 1996년 8월 9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

1. (시행일) 이 학칙은 1997년 2월 14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

1. (시행일) 이 학칙은 1997년 3월 14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

1. (시행일) 이 학칙은 1997년 9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

1. (시행일) 이 학칙은 1997년 10월 1일부터 시행한다.

2. (수업료 등의 반환에 관한 경과조치) 이 학칙 시행전에 이미 납부한 수업료 및 입학금의 반환에 관하여는 종전의 학칙에 의한다. 다만 이학칙 시행후 최초로 도래하는 학기 또는 분기 이후의 수업료 및 입학금의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부 칙

1. (시행일) 이 학칙은 1997년 11월 25일부터 시행한다.

2. (학과의 개편 등에 따른 경과조치) 종전의 관광통역과, 건축설비과, 금융과, 중국어과에 소속된 재적생 중 정당한 사유로 인하여 '98학년도 말까지 졸업하지 못한 자는 실무영어과, 건축환경디자인과, 금융정보과, 실무중국어과의 소속으로 본다.

부 칙

1. (시행일) 이 학칙은 1998년 3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

1. (시행일) 이 학칙은 1998년 5월 1일부터 시행한다.

2. (교명변경에 따른 경과조치) ① 이 학칙 시행당시 종전의 충청전문대학 재적생은 이 학칙에 의하여 충청대학의 재적생으로 본다.
② 이 학칙 시행당시 종전 학칙의 교명으로 수여된 졸업장 또는 전문학사학위는 각각 이 학칙의 교명으로 발급된 것으로 본다.

부 칙

1. (시행일) 이 학칙은 1998년 5월 15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

1. (시행일) 이 학칙은 1998년 7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

1. (시행일) 이 학칙은 1998년 9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

1. (시행일) 이 학칙은 1999년 2월 27일부터 시행한다.

2. (학과의 명칭변경 및 계열화에 따른 경과조치) 학과의 명칭을 변경한 종전의 지적과, 실무영어과, 실무중국어과와 계열화한 종전의 건축환경디자인과, 건축과, 산업디자인과, 실내건축과, 전자과, 전자통신과, 전자계산과, 사무자동화과, 멀티미디어과, 관광과, 실무일어과에 소속된 재학생 중 정당한 사유로 인하여 1999학년도 말까지 졸업하지 못한 자는 지적정보과, 영어통역과, 중국어통역과, 건축공학계열, 실내건축·디자인계열, 전자·통신계열, 컴퓨터계열, 관광계열의 소속으로 보며 전공 분류는 각 계열별 별도 전공분류방법에 의한다.

3. (교과 이수단위 개정에 따른 경과조치) 이 학칙 시행당시 종전의 재학생중 1999학년도 졸업자는 종전의 학칙을 적용한다.

부 칙

1. (시행일) 이 학칙은 2000년 2월 1일부터 시행한다.

2. (학부/학과 명칭변경 및 학부제에 따른 경과조치) 학부/학과의 명칭을 변경한 종전의 경영과, 행정과, 세무회계과, 실내건축·디자인계열, 의상디자인과, 건축공학계열, 지적정보과, 토목과, 식품공업과, 전자·통신계열, 컴퓨터계열, 전기과와 학부제를 시행한 종전의 환경공업과, 화학공업과에 소속된 재학생중 정당한 사유로 인하여 2000학년도 말까지 졸업하지 못한 자는 경영정보과, 행정학과, 회계정보과, 실내건축·디자인학부, 패션산업디자인과, 건축학부, 지적정보공학과, 토목공학과, 식품공학과, 전자공학과, 컴퓨터학부, 전기자동화과, 환경화공학부의 소속으로 보며 전공분류는 각 학부별로 별도의 전공분류방법에 의한다.

부 칙

1. (시행일) 이 학칙은 2000년 6월 1일 부터 시행한다.

부 칙

1. (시행일) 이 학칙은 2000년 12월 15일부터 시행한다.

2. (학부/학과명칭 변경 및 학부제에 따른 경과조치) 학부/학과의 명칭을 변경한 종전의 실내건축·디자인학부, 품질관리과, 식품공학과, 식품영양과, 컴퓨터학부, 컴퓨터소프트웨어과, 정보처리응용과에 소속된 재학생중 정당한 사유로 2001학년도 말까지 졸업하지 못한 자는 뉴미디어학부, 산업정보학과, 식품과학부, 컴퓨터학부, 소프트웨어개발과, 인터넷 정보과 소속으로 보며, 학과/전공의 소속을 변경한 종전의 실내건축·디자인학부의 실내건축전공, 공연예술과는 건축학부, 뉴미디어학부 소속으로 보면 전공분류는 각 학부별로 별도의 전공분류방법에 의한다.

부 칙

1. (시행일) 이 학칙은 2001년 3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

1. (시행일) 이 학칙은 2001년 8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

1. (시행일) 이 학칙은 2002년 2월 15일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4조, 제5조, 제8조, 제24조 제5항, 제31조는 2002년 3월 1일부터 시행한다.

2. (3년제 학부/학과 개설로 인한 복학생 경과조치) 2년제 과정이 3년제 과정으로 변경되었을 경우 2년제 과정으로 입학한자의 신분, 학위취득 등 학사운영에 대하여는 종전의 학칙에 의한다.

3. (학부/학과명칭 변경 및 학부제에 따른 경과조치) 학부/학과의 명칭을 변경한 종전의 식품과학부 식품영양과학전공, 식품과학부 식품공학전공, 환경화공학부 환경공학전공, 환경화공학부 화학공학전공, 건축학부 건축공학전공, 관광학부 여행사경영전공, 행정학과, 지적정보공학과, 토목공학과, 전기자동화과, 전자공학과, 산업정보학과의 소속된 재학생중 정당한 사유로 인하여 2002학년도 말까지 졸업하지 못한 학생은 식품영양과, 생명공학부 식품생명공업전공, 생명공학부 환경공업전공, 화학공업과, 건축학부 건축전공, 관광학부 항공여행전공, 행정과, 지적지형정보시스템과, 건설환경시스템과, 전기정보과, 전자과, 산업정보과 소속으로 보며, 학과/전공의 소속을 변경한 종전의 소프트웨어개발과(야간), 인터넷정보과(야간)은 컴퓨터학부로 통합하여, 학부 소속으로 보면, 전공분류는 각 학부별로 별도의 전공분류방법에 의한다.

부 칙

1. (시행일) 이 학칙은 2003년 3월 1일 부터 시행한다.

2. (학과폐지에 따른 경과조치) ① 폐과된 산업안전과(야간), 산업정보과(야간)는 2003학년도 이전에 입학한 학생이 학적 변동없이 졸업하는 연도까지 존속한다.

② 복학생의 경우에는 산업안전과(주간), 산업정보과(주간)에 각각 복학할 수 있으며 그

소속을 산업안전과(주간), 산업정보과(주간) 재적생으로 본다. 다만, 학생 본인의 희망이 있을 경우 동일계열 유사학과(야간)로의 전과를 허용하고, 이 경우의 전과생은 별도정원이 있는 것으로 본다.

- ③ 야간학과로의 전과 시 졸업연한이 상이한 학과의 전과가 불가함에도 불구하고 폐지 등으로 인한 경우에는 허가할 수 있으며 이 경우의 전과생은 별도 정원이 있는 것으로 본다.

④ 폐지된 학과인 산업안전과(야간), 산업정보과(야간)에서 취득한 학점은 전과하고자 하는 학과의 취득학점으로 인정한다.

3. (전과제에 따른 경과조치) 전과제는 2003학년도 신입생부터 적용한다.

4. (타과수강에 따른 경과조치) 타과수강은 2003학년도 신입생부터 적용한다.

5. (학점은행제에 따른 경과조치) 학점은행제는 2002년도 9월 1일부터 적용한다.

부 칙

- (시행일) 이 학칙은 2004년 3월 1일부터 시행한다.
 - (학부/학과명칭 변경 및 학부제에 따른 경과조치) 명칭을 변경한 학부/학과에 소속된 재학생 중 정당한 사유로 인하여 2004학년도 말까지 졸업하지 못한 학생 중 건축학부 건축환경설비전공은 건축환경설계과로, 건축학부 건축전공은 건축과로, 건축학부 실내건축전공은 실내건축과로, 뉴미디어학부 컴퓨터그래픽전공은 컴퓨터그래픽디자인학부 커뮤니케이션디자인전공 또는 디지털편집디자인전공으로, 뉴미디어학부 컴퓨터애니메이션제작전공은 컴퓨터그래픽디자인학부 디지털애니메이션전공으로, 뉴미디어학부 방송영상전공은 공연영상제작학부 방송영상제작전공으로, 뉴미디어학부 공연제작전공은 공연영상제작학부 공연제작전공으로, 생명공학부 식품생명공업전공은 식품·환경학부 식품생명전공으로 생명공학부 환경공업전공은 식품·환경학부 환경보전전공으로, 컴퓨터학부 웹커뮤니케이션전공은 인터넷정보학부 웹커뮤니케이션전공으로, 컴퓨터학부 정보통신전공은 인터넷정보학부 멀티미디어정보전공으로, 컴퓨터학부 컴퓨터정보과학전공은 인터넷정보학부 소프트웨어정보전공으로, 컴퓨터학부 인터넷정보전공은 컴퓨터정보학부 컴퓨터과학전공으로 지적지형정보시스템과는 토지정보관리과로, 산업안전과는 안전경영설계과로, 전자정보과는 컴퓨터정보학부 컴퓨터전자정보전공으로, 화학공업과는 실용소재과로, 패션산업디자인과는 패션디자인과 소속으로 보며 전공/학과의 소속을 변경한 종전의 컴퓨터학부 인터넷정보전공, 전자정보과는 컴퓨터정보학부로 통합하여 학부 소속으로 보며, 전공분류는 각 학부 별로 별도의 전공분류방법에 의한다.
 - (학과폐지에 따른 경과조치) ① 폐과된 컴퓨터학부 컴퓨터정보과학전공(야간), 인터넷정보전공(야간), 전기정보과(야간), 전자정보과(야간), 컴퓨터응용기계설계과(야간)는 2004학년도 이전에 입학한 학생이 학적 변동없이 졸업하는 연도까지 존속한다.
② 복학생의 경우에는 컴퓨터학부 컴퓨터정보과학전공(야간)은 인터넷정보학부 소프트웨어정보전공(주간), 컴퓨터학부 인터넷정보전공(야간)은 컴퓨터정보학부 컴퓨터과학전공(주간), 전기정보과(야간)은 전기정보과(주간), 전자정보과(야간)은 컴퓨터정보학부 컴퓨터전자정보전공(주간), 컴퓨터응용기계설계과(야간)은 컴퓨터응용기계설계과(주간)에 각각 복학할 수 있으며 그 소속을 인터넷정보학부 소프트웨어정보전공(주간), 컴퓨터정보학부 컴퓨터과학전공(주간)·컴퓨터전자정보전공(주간), 전기정보과(주간), 컴퓨터응용기계설계과(주간)

재적생으로 본다. 다만, 학생 본인의 희망이 있을 경우 동일계열 유사학과(야간)로의 전과를 허용하고, 이 경우의 전과생은 별도정원이 있는 것으로 본다.

부 칙

1. (시행일) 이 학칙은 2004년 4월 14일부터 시행한다. 단, 제4조 및 제5조는 2005년 3월 1일부터 시행한다.
2. (학부/학과명칭 변경 및 학부제에 따른 경과조치) 명칭변경 및 학부/학과의 소속을 변경한 종전의 학부/학과 재학생중 정당한 사유로 인하여 2005학년도 말까지 졸업하지 못한 학생 중 행정과는 행정학부로, 경영정보과, 회계정보과, 금융정보과는 경영학부로, 영어통역과, 중국어통역과는 국제어학부로, 아동복지과는 사회복지학부로, 전기정보과는 전기전자학부로, 컴퓨터응용기계설계과는 항공기계설계학부로, 피부미용과는 보건예술학부로, 식품영양과, 식품환경학부는 보건영양학부로, 인터넷정보학부, 컴퓨터정보학부는 컴퓨터학부로, 건축환경설계과, 건축과, 실내건축과는 건축인테리어학부로, 토지정보관리과는 부동산컨설팅과로, 건설환경시스템과는 건설교통과로, 산업정보과는 품질경영과로, 안전경영설계과는 소방안전과로, 실용소재과는 화장품과학과 소속으로 보며, 전공분류는 각 학부별로 별도의 전공분류방법에 의한다.
3. (학과폐지에 따른 경과조치) ① 폐과된 메카트로닉스과(야간)는 2005학년도 이전에 입학한 학생이 학적 변동없이 졸업하는 연도까지 존속한다.
② 복학생의 경우에는 메카트로닉스과(야간)은 항공기계설계학부(주간)에 복학할 수 있으며 그 소속을 항공기계설계학부(주간) 재적생으로 본다. 다만, 학생 본인의 희망이 있을 경우 동일계열 유사학과(야간)로의 전과를 허용하고, 이 경우의 전과생은 별도정원이 있는 것으로 본다.

부 칙

1. (시행일) 이 학칙은 2004년 7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

1. (시행일) 이 학칙은 2005년 3월 1일부터 시행한다.
2. (학부/학과명칭 변경 및 학부제에 따른 경과조치) 명칭을 변경한 학부/학과에 소속된 재학생 중 정당한 사유로 인하여 2005학년도 말까지 졸업하지 못한 학생 중 건축환경설계과는 건축인테리어학부 건축환경설비전공으로, 건축과는 건축인테리어학부 건축전공으로, 실내건축과는 건축인테리어학부 실내건축전공으로, 경영정보과는 경영학부 경영전공으로, 회계정보과는 경영학부 회계전공으로, 금융정보과는 경영학부 금융전공으로, 영어통역과는 국제어학부 영어전공으로, 중국어통역과는 국제어학부 중국어전공으로, 식품영양과는 보건영양학부 식품영양전공으로, 식품·환경학부 식품생명전공은 보건영양학부 외식·건강식품전공으로, 식품·환경학부 환경보전전공은 보건영양학부 보건환경위생전공으로, 피부미용과는 보건예술학부로, 아동복지과는 사회복지학부 아동복지전공으로, 전기정보과는 전기

전자학부 전기전보전공으로, 인터넷정보학부 소프트웨어정보전공은 컴퓨터학부 멀티미디어정보전공으로, 인터넷정보학부 웹커뮤니케이션전공은 컴퓨터학부 인터넷정보전공으로, 인터넷정보학부 멀티미디어정보전공은 컴퓨터학부 정보통신전공으로, 컴퓨터응용기계설계과는 항공기계설계학부 기계설계전공으로, 행정과는 행정학부로, 건설환경시스템과는 건설교통과로, 토지정보관리과는 부동산컨설팅과로, 안전경영설계과는 소방안전과로, 산업정보과는 품질경영과로, 실용소재과는 화장품과학과 소속으로 간주한다.

3. (학부/학과폐지에 따른 경과조치) ① 폐과된 컴퓨터정보학부 컴퓨터과학전공과 컴퓨터전자정보전공, 메카트로닉스과(야간)은 2005학년도 이전에 입학한 학생이 학적 변동 없이 졸업하는 연도까지 존속한다.

② 컴퓨터정보학부, 메카트로닉스과(야간)의 복학생은 학생 본인의 희망이 있을 경우 동일계열 유사학과로의 전과를 허용하고, 이 경우의 전과생은 별도정원이 있는 것으로 본다.

③ 졸업유보자가 재학을 희망하는 경우에는 동일계열 유사학과로의 전과를 허용하고, 이 경우의 전과생은 별도정원이 있는 것으로 본다.

4. (재입학에 따른 경과조치) 제17조 제1항에 의거 허가를 받아 재입학 하는 자종에 고등교육법 시행령 개정 전에 재입학을 신청하는 경우에는 종전의 학칙을 적용한다.

부 칙

1. (시행일) 이 학칙은 2005년 9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

1. (시행일) 이 학칙은 2006년 2월 1일부터 시행한다.

2. (학부/학과명칭 변경 및 학부/학과전환에 따른 경과조치) 명칭을 변경한 학부/학과에 소속된 재학생 중 정당한 사유로 인하여 2006학년도 말까지 졸업하지 못한 학생 중 경영학부는 경영회계학부로, 국제어학부 영어전공은 영어통역과로, 중국어전공은 중국어통역과로, 일어전공은 일어통역과로, 의료산업학부는 보건의료정보과로, 패션연예코디과는 패션연예코디네이션과로, 보건예술학부는 피부미용학부 소속으로 간주한다.

3. (학부/학과폐지에 따른 경과조치) ① 폐지된 학부/학과는 2006학년도 이전에 입학한 학생이 학적 변동 없이 졸업하는 연도까지 존속한다.

② 폐지된 학부/학과의 복학생은 학생 본인의 원에 의해 유사학부/학과로의 전부/전과를 허용하고, 이 경우의 전부/전과생은 별도정원이 있는 것으로 간주하며, 학제를 달리하는 경우 입학당시의 학제를 원칙으로 하되, 본인의 원에 의해 복학당시의 학제를 따를 수 있다.

부 칙

1. (시행일) 이 학칙은 2007년 3월 1일부터 시행한다.

2. (학부/학과명칭 변경 및 학부/학과전환에 따른 경과조치) 명칭을 변경한 학부/학과에 소속된 재학생 중 정당한 사유로 인하여 2007학년도 말까지 졸업하지 못한 학생 중 부동

산컨설팅과는 부동산지적과로, 방송연예코디네이션과는 방송연예과로, 항공기계설계학부는 항공자동차기계학부로, 컴퓨터그래픽디자인학부는 컴퓨터그래픽디자인과로, 공연영상제작학부는 공연제작과 또는 방송광고제작과 소속으로 간주한다.

부 칙

1. (시행일) 이 학칙은 2008년 3월 1일부터 시행한다.
2. (학부/학과명칭 변경에 따른 경과조치) 명칭을 변경한 학부/학과에 소속된 재학생 중 정당한 사유로 인하여 2008학년도 말까지 졸업하지 못한 학생 중 화장품과학과는 생명화공과 소속으로 간주한다.

부 칙

1. (시행일) 이 학칙은 2009년 2월 2일부터 시행한다.
2. (학부/학과명칭 변경에 따른 경과조치) 명칭을 변경한 학부/학과에 소속된 재학생 중 정당한 사유로 인하여 2009학년도 말까지 졸업하지 못한 학생 중 공연제작과는 공연이벤트연출과로, 건설교통과는 토목과 소속으로 간주한다.

부 칙

1. (시행일) 이 학칙은 2010년 3월 1일부터 시행한다.
2. (학부/학과명칭 변경에 따른 경과조치) 명칭을 변경한 학부/학과에 소속된 재학생 중 정당한 사유로 인하여 2010학년도 말까지 졸업하지 못한 학생 중 텔레마케팅정보과는 디지털마케팅과로, 부사관과는 전문사관과로, 음악과는 실용음악과로, 스포츠외교과는 무도경영과로, 식품영양학부 급식영양전공은 식품영양전공으로, 식품영양학부 보건환경위생전공은 식·의약품질분석전공 소속으로 간주한다.
3. (학부/학과 주·야 전환에 따른 경과조치) ① 주·야 전환된 사회복지상담과(야간), 피부미용학부(야간)은 2010학년도 이전에 입학한 학생이 학적 변동 없이 졸업하는 연도까지 존속한다.
② 주·야 전환된 사회복지상담과(야간) 복학생은 사회복지상담과(주간)으로, 피부미용학부(야간) 복학생은 피부미용학부(주간)으로 복학 할 수 있으며 그 소속을 사회복지상담과(주간), 피부미용학부(주간) 재적생으로 간주한다.
4. (학과폐지에 따른 경과조치) ① 폐과된 웰빙식품산업과, 다이어트건강관리과, 중국어통역과는 2010학년도 이전에 입학한 학생이 학적 변동 없이 졸업하는 연도까지 존속한다.
② 폐과된 학과의 복학생은 학생 본인의 원에 의해 전부/전과를 허용하고, 이 경우의 전부/전과생은 별도정원이 있는 것으로 간주한다.

부 칙

1. (시행일) 이 학칙은 2011년 3월 1일부터 시행한다.

2. (수업연한 변경에 관한 경과조치) 2년제 과정이 3년제 과정으로 변경되었을 경우 2년제 과정으로 입학한 자의 신분, 학위취득 등 학사운영에 대하여는 종전의 학칙에 의한다.
3. (학부/학과명칭 변경에 따른 경과조치) 명칭을 변경한 학부/학과에 소속된 재학생 중 정당한 사유로 인하여 2011학년도 말까지 졸업하지 못한 학생 중 컴퓨터그래픽디자인과는 시각디자인과로, 공연이벤트연출과는 공연영상연출과로, 관광학부는 항공호텔관광학부 소속으로 간주하며, 전공분류는 각 학부별로 별도의 전공분류방법에 의한다.
4. (학부의 학과전환에 따른 경과조치) 학부에서 학과로 전환된 건축인테리어학부, 행정학부는 2011학년도 이전에 입학한 학생이 학적 변동 없이 졸업하는 연도까지 존속한다.

부 칙

1. (시행일) 이 학칙은 2011년 7월 1일 부터 시행한다.

부 칙

1. (시행일) 이 학칙은 2012년 2월 1일부터 시행한다.
2. (교명변경에 따른 경과조치) ① 이 학칙 시행당시 종전의 충청대학 재학생은 이 학칙에 의하여 충청대학교의 재학생으로 본다.
② 이 학칙 시행당시 종전의 학칙의 교명으로 수여된 졸업장 또는 전문학사학위 및 학사학위는 각각 이 학칙의 교명으로 발급된 것으로 본다.
3. (수업연한 변경에 관한 경과조치) 3년제 과정이 4년제 과정으로 변경되었을 경우 3년제 과정으로 입학한 자의 신분, 학위취득 등 학사운영에 대하여는 종전의 학칙에 의한다.
4. (학부/학과명칭 변경에 따른 경과조치) 명칭을 변경한 학부/학과에 소속된 재학생 중 정당한 사유로 인하여 2012학년도 말까지 졸업하지 못한 학생 중 무도경영과는 태권도지도과로, 간호과는 간호학과 소속으로 간주한다.
5. (학과폐지에 따른 경과조치) ① 폐과된 공연영상연출과는 2012학년도 이전에 입학한 학생이 학적 변동없이 졸업하는 연도까지 존속한다.
② 폐과된 학생의 복학생은 학생 본인의 원에 의해 전부/전과를 허용하고, 이 경우의 전부/전과생은 별도정원이 있는 것으로 간주한다.

부 칙

1. (시행일) 이 학칙은 2012년 10월 22일 부터 시행한다.
2. (학부/학과명칭 변경에 따른 경과조치) 명칭을 변경한 학부/학과에 소속된 재학생 중 정당한 사유로 인하여 2013학년도 말까지 졸업하지 못한 학생 중 식품영양학부는 식품영양외식학부 소속으로 간주하며, 전공분류는 학부의 전공분류 방법에 의한다.
3. (학과폐지에 따른 경과조치) ① 폐과된 방송연예과, 태권도지도과, 영어통역과, 사회복지상담과는 2013학년도 이전에 입학한 학생이 학적 변동없이 졸업하는 연도까지 존속한다.
② 폐과된 학생의 복학생은 학생 본인의 원에 의해 전부/전과를 허용하고, 이 경우의 전부/전과생은 별도정원이 있는 것으로 간주한다.

부 칙

1. (시행일) 이 학칙은 2013년 4월 23일 부터 시행한다.
2. (수업연한 변경에 따른 경과조치) ① 2년제 과정이 3년제 과정으로 변경되었을 경우 2년제 과정으로 입학한 자의 신분, 학위취득 등 학사운영에 대하여는 종전의 학칙에 의한다.
 ② 종전의 2년제 과정으로 입학한 학생이 휴학하였다가 복학할 경우 복학하는 학생은 본인의 의사에 따라 2년제 또는 3년제학과를 선택하여 재학 할 수 있다.
3. (학부/학과 명칭변경 및 개편에 따른 경과조치) ① 명칭이 변경된 학과에 소속된 재학생 중 정당한 사유로 인하여 2014학년도 말까지 졸업하지 못한 전문사관과학생은 군사학과 소속으로 본다.
 ② 개편된 학부에 소속된 재학생 중 정당한 사유로 인하여 2013학년도 말까지 졸업하지 못한 식품영양학부의 식·의약품질분석전공 학생은 본의의 의사에 따라 식품영양외식학부 또는 식의약품분석과를 선택하여 재학 할 수 있다
 ③ 개편된 학부에 소속된 재학생 중 정당한 사유로 인하여 2014학년도 말까지 졸업하지 못한 피부미용학부학생은 본의의 의사에 따라 피부미용과 또는 의료미용과를 선택하여 재학 할 수 있다
4. (학과폐지에 따른 경과조치) ① 폐과된 디지털마케팅과는 2014학년도 이전에 입학한 학생이 학적 변동없이 졸업하는 연도까지 존속한다.
 ② 폐과된 학과의 복학생은 학생 본인의 원에 의해 전부/전과를 허용하고, 이 경우의 전부/전과생은 별도정원이 있는 것으로 본다.

부 칙

1. (시행일) 이 학칙은 2014년 1월 27일 부터 시행한다.

부 칙

1. (시행일) 이 학칙은 2014년 10월 23일 부터 시행한다.
2. (수업연한 변경에 따른 경과조치) ① 2년제 과정이 3년제 과정으로 변경되었을 경우 2년제 과정으로 입학한 자의 신분, 학위 취득 등 학사운영에 대하여는 종전의 학칙에 의한다.
 ② 종전의 2년제 과정으로 입학한 학생이 휴학하였다가 복학할 경우 복학하는 학생은 본인의 의사에 따라 2년제 또는 3년제 학과를 선택하여 재학 할 수 있다.
3. (학부/학과 명칭변경 및 개편에 따른 경과조치) ① 명칭이 변경된 학과 및 전공에 소속된 재학생 중 정당한 사유로 인하여 2015학년도 말까지 졸업하지 못한 학생 중 피부미용과는 미용예술과로 식품영양학부 외식산업전공은 호텔외식조리전공 소속으로 간주한다.
 ② 개편된 학부(과)에 소속된 재학생 중 정당한 사유로 인하여 2015학년도 말까지 졸업하지 못한 일본어통역과 학생은 항공호텔관광학부 일본어통역전공으로 건축과생은 건축인테리어학부 건축전공으로 실내건축과생은 건축인테리어학부 인테리어디자인전공으로 국방정보통신과생은 군사학부 국방정보통신전공으로 군사학과생은 군사학부 군사기술경영전공으로 디지

털전자통신과생은 전자컴퓨터학부 전자통신전공으로 컴퓨터정보과생은 전자컴퓨터학부 컴퓨터전공으로 방송광고제작과생은 예술학부 방송광고제작전공으로 실용음악과생은 예술학부 실용음악전공으로 패션디자인과생은 디자인학부 패션디자인전공으로 시각디자인과생은 디자인학부 시각디자인전공으로 본다.

③ 개편된 학부에 소속된 재학생 중 정당한 사유로 인하여 2015학년도 말까지 졸업하지 못한 사회복지학부 학생은 본인의 의사에 따라 사회복지과 또는 아동보육과를 선택하여 재학 할 수 있다.

4. (학과 및 전공폐지에 따른 경과조치) ① 폐과된 부동산지적과, 안경광학과, 한중비즈니스파, 경영회계학부 세무전공, 항공호텔관광학부 스튜어디스전공은 2015학년도 이전에 입학한 학생이 학적 변동 없이 졸업하는 연도까지 존속한다.

② 폐지된 학과 및 전공의 복학생은 학생 본인의 원에 의해 전부/전과를 허용하고, 이 경우의 전부/전과생은 별도정원이 있는 것으로 본다.

부 칙

1. (시행일) 이 학칙은 2015년 3월 30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

1. (시행일) 이 학칙은 2015년 4월 27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

1. (시행일) 이 학칙은 2015년 11월 12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

1. (시행일) 이 학칙은 2016년 4월 29일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4조(설치학부/학과 및 입학 정원)은 2017년 3월 1일부터 적용한다.

2. (학부/학과 명칭변경에 따른 경과조치) ① 명칭이 변경된 학과에 소속된 재학생 중 정당한 사유로 인하여 2017학년도 말까지 졸업하지 못한 학생 중 토목과는 도시건설정보과로, 항공자동차기계학부 항공기계전공은 항공정비전공으로, 항공호텔관광학부 호텔바리스타전공은 항공호텔관광학부 호텔·바리스타전공 소속으로 본다.

부 칙

1. (시행일) 이 학칙은 2016년 8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

1. (시행일) 이 학칙은 2016년 9월 1일 부터 시행한다.

[별지 1]

제 호

학 위 증 서

성 명 :

생년월일 :

위 사람은 학년도 본 대학교 과 소정의
전 과정을 이수하고 전문학사의 자격을 얻었으므로
이 증서를 수여함.

년 월 일

충 청 대 학 교 총 장

학위번호 : 충청대학교 000-0000

[별지 1-1]

제 호

학 위 증

성 명 :

주민등록번호 :

전 공 :

학점인정등에관한법률 제9조 및 학칙 제61조의
규정에 의하여 ()의 학위를 수여함.

년 월 일

충 청 대 학 교 총 장

학위번호 : 학점_____

[별지 2]

제 호

수 료 증 서

성 명 :

생년월일 :

위 사람은 본 대학교
수료 하였기에 이 증서를 수여함.

년 월 일

충 청 대 학 교 총 장

[별지 3]

제 호

학 위 증

성명 :

생년월일 :

학과 :

위 사람은 본 대학교 소정의 전 과정을 이수하고
00학사의 자격을 얻었으므로 이 증서를 수여함.

년 월 일

충 청 대 학 교 총 장

학위번호 : 충청대학교 000-0000

[별표 1]

전문학사 학위종별

[2016학년도]

학위종별	학부전공 및 학과		학위종별	학부전공 및 학과	
경 전 문 학 사	경영학	영어학부	경영전공	행전문학사	경찰행정과
	영어학부	영어학부	회계전공	사회복지사전문학사	사회복지과
관 전 문 학 사	관광호텔 관광학부		항공관광전공	보전문학사	아동보육과
			호텔바리스타전공	유아교육전문학사	유아교육과
			일본어통역전공	보건의료전문학사	보건의료정보과
식 품·영 양· 외 전 문 학 사	식품영양· 외식학부		식품영양전공	식의약분석전문학사	식의약품분석과
			식품전공	보전문학사	응급구조과
			호텔외식조리전공	의료미용전문학사	의료미용과
건 축 전 문 학 사	건축학부	건축부	건축전공	치위생전문학사	치위생과
			인테리어디자인전공	화학공업전문학사	생명화공과
국 방 기 술 전 문 학 사	군사학부		군사기술경영전공	소방·안전전문학사	소방안전과
			국방정보통신전공	공전문학사	토목과
전 기 전 자 전 문 학 사	전기전자학부		반도체장비전공	품질경영전문학사	품질경영과
			전기전공	교통보안전문학사	항공보안과
전 자 컴퓨터정보 전 문 학 사	전자컴퓨터학부		전자통신전공	미전문학사	미용예술과
			컴퓨터정보전공	체전문학사	사회체육과
공 전 문 학 사	항공자동차기계학부		기계설계전공	10개 학부(23개 전공) 16개 학과	
			자동차전공	10개 학부(23개 전공) 16개 학과	
			항공기계전공	10개 학부(23개 전공) 16개 학과	
디 자 인 전 문 학 사	디자인학부		시각디자인전공	10개 학부(23개 전공) 16개 학과	
			패션디자인전공	10개 학부(23개 전공) 16개 학과	
예 전 문 학 사	예술학부		방송광고제작전공	10개 학부(23개 전공) 16개 학과	
			실용음악전공	10개 학부(23개 전공) 16개 학과	

학사 학위종별

[2016학년도]

학위종별	학부전공 및 학과	학위종별	학부전공 및 학과
간호학사	간호학과	사회복지학사	사회복지상담학과
공학사	토목공학과	의료미용학사	의료미용학과
문학사	일본어통역학과	치위생학사	치위생학과
실용음악학사	실용음악과	건축학사	인테리어디자인학과

전문학사 학위종별

[2017학년도]

학위종별	학부전공 및 학과		학위종별	학부전공 및 학과	
경 전 문 학 사	경 회 학	영 계 부	경 영 전 공	행 전 문 학 사	정 경 찰 행 정 과
			회 계 전 공	사 회 문 학 사	복 전 지 과
관 전 문 학 사	항 공 관 광 학 부	호 텔 관 광 학 부	항 공 관 광 전 공	보 전 문 학 사	유 전 보 육 과
			호 텔 · 바 리 스 타 전 공	아 동 보 육 과	
			일 본 어 통 역 전 공	유 아 교 육 과	
식 품 · 영 양 · 외 전 문 학 사	식 품 영 양 외 식 학 부	식 품 영 양 전 공	유 아 교 육 과	유 아 교 육 과	
		식 품 전 공	보 건 의 료 보 전 문 학 사	보 건 의 료 정 보 과	
		호 텔 외 식 조리 전 공	식 의 약 분 석 전 문 학 사	식 의 약 품 분 석 과	
건 축 전 문 학 사	건 축 인 테리 어 학 부	건 축 전 공	보 전 문 학 사	용 급 구 조 과	
		인 테리 어 디자인 전 공	의 료 미 용 전 문 학 사	의 료 미 용 과	
국 방 기 술 전 문 학 사	군 사 학 부	군 사 기술 경영 전 공	치 위 생 전 문 학 사	치 위 생 과	
		국 방 정 보 통신 전 공	화 학 공 업 전 문 학 사	생 명 화 공 과	
전 기 전 자 전 문 학 사	전 기 전 자 학 부	반 도 체 장 비 전 공	소 방 · 안 전 전 문 학 사	소 방 안 전 과	
		전 기 전 공	공 전 문 학 사	도 시 건 설 정 보 과	
전 자 자 켜 퓨 전 문 학 사	전 자 켜 퓨 부	전 자 통 신 전 공	품 질 경 영 전 문 학 사	품 질 경 영 과	
		컴 퓨 터 정 보 전 공	교 통 보 안 전 문 학 사	항 공 보 안 과	
공 전 문 학 사	항 자 동 차 기 계 학 부	기 계 설 계 전 공	미 전 문 학 용 사	미 용 예 술 과	
		자 동 차 전 공			
		항 공 정 비 전 공			
디 자 인 전 문 학 사	디 자 인 부	시 각 디 자 인 전 공	체 전 문 학 육 사	체 회 육 과	
		패션 디 자 인 전 공			
예 전 문 학 사	예 술 학 부	방 송 광 고 제 작 전 공			
		실 용 음 악 전 공			

10개 학부(23개 전공) 16개 학과

학사 학위종별

[2017학년도]

학위종별	학부전공 및 학과	학위종별	학부전공 및 학과
간호학사	간호학과	사회복지학사	사회복지상담학과
공학사	토목공학과	의료미용학사	의료미용학과
문학사	일본어통역학과	치위생학사	치위생학과
실용음악학사	실용음악과	건축학사	인테리어디자인학과